##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Ⅲ.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	
1.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	1.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
가. ~ 카. (생 략)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
타. (생략)	타. (현행과 같음)
- <u>다만</u> ,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 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 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	<u>파.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</u>
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%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 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	
	-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한다.(유가증권 등 자산거래, 부동산 임대차, 상품·용 역거래,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 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)
2. 유가증권·부동산·무체재산권 등 자산 을 거래한 경우	2. 유가증권·부동산·무체재산권 등 자산 을 거래한 경우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마.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원 미 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3.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	3.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

현 행	개 정 안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라. 실제 임대료·임차료와 정상 임대료·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·임차료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4. 상품·용역을 거래한 경우	4. 상품·용역을 거래한 경우
가.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	가.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
1). ~ 5). (생 략)	1). ~ 5)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6)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·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7% 미만이고, 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·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나.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	나.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
1). ~ 4). (생 략)	1). ~ 4)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5)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·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, 거래상 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	-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,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회사하고 그래요 평구메추애으로 보다

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.

현 행	개 정 안
5. 인력을 제공한 경우	5. 인력을 제공한 경우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라.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 상급여의 7% 미만이고,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 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IV. 부당성 판단기준	Ⅳ. 부당성 판단기준
1.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	1.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	<u>〈삭 제〉</u>
<u>사.</u> (생 략)	<u>바.</u> (생 략)
<u>아.</u> (생 략)	<u>사.</u> (생 략)
W. 재검토기한	Ⅵ. 재검토기한
공정거래위원회는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<u>2023년 1월 1일</u>
부칙 〈제355호, 2020.9.10.〉 이 지침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	
<u>〈신 설〉</u>	부칙 〈제000호, 2022.00.00.〉 이 지침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